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9. 29)

1.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행복주택 758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2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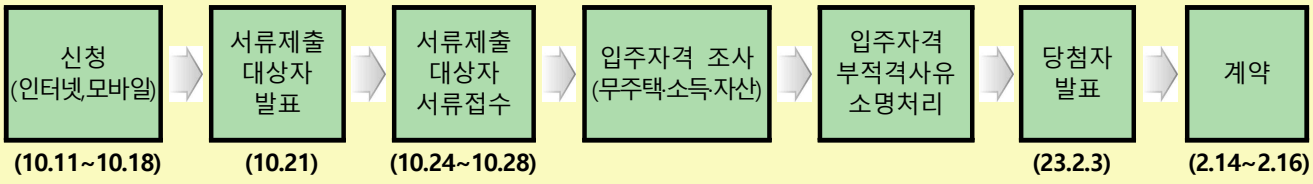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9.30~2003.9.2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7.9.29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22. 10. 11(화) 10:00 ~ 10. 18(화) 18:00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접수] **10. 13(목)** 10:00~16:00 ※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10. 21(금) 17:00 이후** (서류제출대상 여부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10. 24(월) ~ 10. 28(금)**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일반우편 접수불가	**23. 2. 3(금)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또는 ARS(1661-7700)	**23. 2. 14(화) 10:00 ~ 2. 16(목) 17:00**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9. 30(금)**(LH공사 창립기념일)**에는 전국 대표전화 1600-1004**(평일 09:00 ~ 18:00)**의 전화 연결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10.21(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제출기간(**10. 24 ~ 10. 28**)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 방법

 - P C : LH청약센터(apply.LH.or.k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2.10.28(금)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 간 : **10. 13(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 소 :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16~18쪽 참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금회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29A 29B	대학생	**98**	**198**	29.75	15.5139	2.8160	10.8176	58.8975	**26,520**	1,326	25,194	**114,470**	(+) 9,000	35,520	69,470	6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지역난방	**23.10** (예정)
													(-) 22,000	4,520	160,300			
	청년(소득無)	**98**							**26,520**	1,326	25,194	**114,470**	(+) 9,000	35,520	69,470			
													(-) 22,000	4,520	160,300			
	청년(소득有)								**28,080**	1,404	26,676	**121,210**	(+) 11,000	39,080	66,210			
													(-) 23,000	5,080	169,120			
	주거급여수급자	**27**	**27**						**23,400**	1,170	22,230	**101,010**	(+) 7,000	30,400	66,010	20		
													(-) 19,000	4,400	140,590			
29A1 29B1	고령자 (주거약자용)	**22**	**22**	29.74	15.5087	2.8151	10.8139	58.8777	**29,640**	1,482	28,158	**127,940**	(+) 12,000	41,640	67,940			
													(-) 25,000	4,640	180,020			
36A	청년(소득無)	**53**	**53**	36.90	19.2424	3.4928	13.4174	73.0526	**33,320**	1,666	31,654	**143,830**	(+) 15,000	48,320	68,830	6		
													(-) 28,000	5,320	202,160			
	청년(소득有)								**35,280**	1,764	33,516	**152,290**	(+) 17,000	52,280	67,290			
													(-) 30,000	5,280	214,790			
	고령자 (주거약자외)	**7**	**7**						**37,240**	1,862	35,378	**160,750**	(+) 19,000	56,240	65,750	20		
													(-) 31,000	6,240	225,330			
	주거급여수급자	**6**	**6**						**29,400**	1,470	27,930	**126,910**	(+) 12,000	41,400	66,910			
													(-) 25,000	4,400	178,990			
44A	청년(소득無)	**36**	**37**	44.96	23.4455	4.2558	16.3482	89.0095	**40,800**	2,040	38,760	**176,120**	(+) 21,000	61,800	71,120	6		
													(-) 34,000	6,800	246,950			
	청년(소득有)								**43,200**	2,160	41,040	**186,480**	(+) 22,000	65,200	76,480			
													(-) 36,000	7,200	261,48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7**	**18**						**48,000**	2,400	45,600	**207,200**	(+) 24,000	72,000	87,200	6~10		
													(-) 40,000	8,000	290,530			
	고령자 (주거약자외)	**13**	**13**						**45,600**	2,280	43,320	**196,840**	(+) 23,000	68,600	81,840	20		
													(-) 38,000	7,600	276,000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 물량은 해당 공급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9A/B형의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 계층"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물량은 수요가 있는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9A/B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 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9A1/29B1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u>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u>**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 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 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대학생)	화성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

항목	3점	1점
대학생	부모 모두 화성시 및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화성시 외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 (단, 부모 모두 화성시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3년 미만 거주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29A/B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4-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09.30~2003.09.29)**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세대원 (본인)	1인	3,854,536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화성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감정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상단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클릭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29A/B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4-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①-㉮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 신혼부부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
2인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인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인	7,200,809원 이하	100%	8,640,971원 이하	120%
5인	7,326,072원 이하	100%	8,791,286원 이하	120%
6인	7,779,825원 이하	100%	9,335,790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맞벌이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화성시가 거주지인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우선공급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감정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상단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클릭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화성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화성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화성시가 거주지인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7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5년 이상 거주	-	**화성시**에 5년 미만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화성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화성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9)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화성시가 거주지인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5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5년 미만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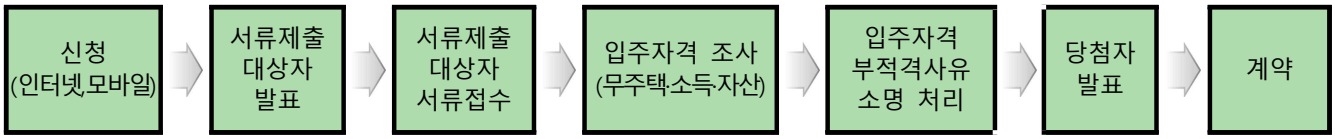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화성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화성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5. 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 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순위 및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준비 → LH청약센터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센터 접속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계층 및 일반공급 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2. 10. 11(화) 10:00 ~ 10. 18(화)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 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계층 및 일반공급 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22. 10. 11(화) 10:00 ~ 10. 18(화) 18:00)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계약내역 조회, 보증금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기간(10.24~10.28)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22.10. 21(금) 오후 5시~)**
 - **PC** : LH청약센터(apply.lh.or.kr) →『인터넷청약』 클릭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일반우편 접수불가)
 - 서류제출 기한 : **'22. 10. 24(월) ~ 10. 28(금)**
 - 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화성비봉 A-5블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서류제출 안내문**은 서류제출대상 발표일(10.21(금) 오후5시)에 'LH청약센터(apply.lh.or.kr) →『인터넷청약』→『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에 게시됩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에 발송한 등기우편도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현장 접수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table>
<tr><td>기 간</td><td>10. 13(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td><td rowspan="2">약 도</td><td rowspan="2"></td></tr>
<tr><td>장 소</td><td>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td></tr>
<tr><td>대중
교통편</td><td colspan="3">(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도보 2분 거리)
(버스) 오리역 하차
- 일반버스 : 60, 101, 116-1, 116-3, 300, 37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td></tr>
<tr><td>구 비
서 류</td><td colspan="3">☐ 아래 서류와 [6.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td></tr>
</table>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9.2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내 용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등본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붙임1)**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공사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예외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붙임4)**		1통 (공사양식)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붙임5)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공사양식)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년계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청년계층	해당자만 제출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해당 학교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붙임6-1)**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붙임6-2)** •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도 발급 가능) ※ 입주 시점에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미제출 시 입주 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공사양식) (공사양식)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신청자 본인**의 아래서류 제출 •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배우자**의 아래서류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고령자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3. 2. 3(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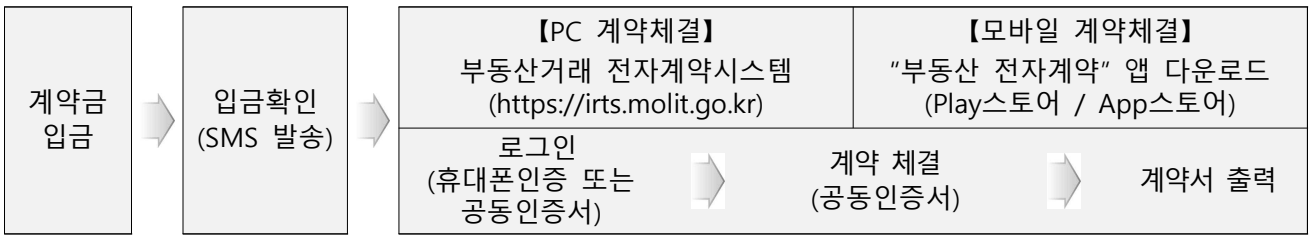
■ 계약 안내

○ **전자 계약 : '23. 2. 14(화) 10:00 ~ 2. 16(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계약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은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대학생, 청년 계층</td><td>6년</td></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tr>
<tr><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able>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td></tr>
</table>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 120% 10%초과 30%이하: 120% / 130% 30%초과: 130% /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2년의 경우 3,557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 **지구 내·외부 여건** - 현재 토지이용계획도면과 최종 토지이용계획도면은 당해 사업지구의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 진행 지구이므로 입주 후에도 주변도로, 조경·조성공사,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및 교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로 개설계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지연·취소될 수 있음
- 화성비봉 사업지구 내 학생배치 여건, 학생유입 규모 변동 등 학생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및 교육정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지구 내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 학교 현황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따름
- 지구 내 학교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상업시설 및 공공청사(소방소 등), 편의시설 등의 설치는 해당부지 판매일정 및 매수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서울시 중심으로부터 남측 약 35km 지점에 위치하며, 사업지구 동측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존재하며, 남측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지방도 313호선이 입지하고 있으며, 시도78호선이 사업지구를 남북으로 통과하며, 사업지구 북측에서 3km이내 야목역(수인분당선)이 위치함
- 인근 지구로는 어천역이 있는 '화성어천지구' 및 화성시청이 있는 '화성남양뉴타운'이 존재함
- 본 단지는 화성비봉지구 내의 기착공 및 미착공 필지가 인접하여, 입주 후 공사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사 차량 통행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북측에 위험물 저장시설인 '주유소'가 존재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지구내에 위치하지 않음
- 사업지구 북측에서 3km 이내에 市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남동측 반경 1.3km 이내 목장 및 과수원이 있음
- 단지 남측 직선 600m거리에 왕래봉산 분묘가 위치함
- 단지 동측 직선 400m거리에 소형공장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서쪽 직선 3km 거리에 양노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대형 트럭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인근 군비행장이 위치하여 비행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비봉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여건**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 및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전기실 주변 501, 502동, 상가동 인근동(동)은 발전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동 지하 PIT층, 지하주차장 등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휀룸(전체 동)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생활권의 침해를 줄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냉방을 위한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동력 흡출기와 제연휀이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차량도로가 있으며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 및 저층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 조명(503동, 504동 측벽

	LED C.I 로고)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수거함이 일부 동 주변(정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재활용품보관소는 지상 6개소 계획되어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각 동별 거리가 다소 차이가 있음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주변 1층에 설치되어 있어 저층 세대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동 전면, 후면, 조경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으며, 각 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수목, 시설물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 주변에 설치예정이나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택배보관함은 504동 1층, 그 외동은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기기 가동 시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함, 주동진입 경사로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에 위치하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504동 제외)**으로 단지 배치 상 동별로 주차 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일부구간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며,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경고등으로 인해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큰 나무) 식재 불가함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을 지분으로 구분함 - 주민복지시설(어린이집, 피트니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사회복지관, 경비실, 경로당, 사회적기업 등)에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는 2개소(차량 출입구1개소, 보행자 출입구 1개소)이며, 출구에 차양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차양의 재질에 따라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명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본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주의 요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전동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며, 일부세대는 설치된 태양광 모듈 빛 반사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1대(2CH), 과금형 콘센트 9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8,9항 및 제16조)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501, 503, 506동 옥상과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 이상**입니다.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 개인의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욕실(UBR)이 설치되어 욕실문 개폐 시 내·외부 압력차에 의해 천장점검구의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강한 충격 시 파손 및 울림소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음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거실 및 각 침실에는 난방용 온도조절기가 설치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상하부장 후면에는 벽타일이 시공되지 않고 신발장 후면에는 벽도배가 시공되지 않음
-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배치를 위한 냉장고장이 별도 설치되지 않음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본 단지 세대에는 가스공급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취사용 가스레인지, 가스 건조기 등 도시

가스 사용 기반의 기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26m², 29m² 2구형 전기쿡탑 / 36m², 44m² : 3구형 전기쿡탑)
- 각 평형별로 현관의 신발장 설치 형태가 상이함
- 아파트 세대현관문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음
- 벽/바닥타일 등은 실제 시공 및 생산과정에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스테이플 건(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마감재의 디자인 특성(색상, 패턴, 재질 등)은 하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인해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에어컨 실외기 루버는 수동으로 작동되며, 계절에 따라 입주자가 직접 개폐하여야 함
- 발코니 샤시의 개폐방향은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내부에 빨래 건조대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세탁용 수도꼭지가 설치됨
- 발코니 분절형 창호 설치로 별도 발코니 난간대는 설치되지 않음,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 등이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음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색상 및 무늬는 자재수급(선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고,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함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팸플릿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면의 환기구 및 창호 개폐가능 여부 등의 세부적인 표기는 생략되었음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초등학생은 (가칭)비봉1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나, (가칭)비봉1초등학교는 202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단지의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는 불가하여 개교 전까지 인근 비봉초등학교로 임시배치할 예정입니다. 단, 비봉초등학교까지 통학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는 입주민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해당 초등학교와 협의 예정입니다.
- 중학생은 비봉중학군[비봉중, (가칭)비봉1중]에,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은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복수 지

	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협의사항은 2023년 10월(입주시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력벽 재사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톱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이용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화성비봉 A-5	한국토지주택공사	SG신성건설(주) 진산건설(주) 성일기계(주) 신한전력(주) 세종텔레콤(주)	해당없음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업체)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신청할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천장에 설치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공고문 별도 첨부

▶ 신청기간 : **2023. 2. 14 ~ 2. 16**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으며, **계약기간 마감일('23.2.16)**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화성비봉 A-5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문의처	전 화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인터넷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 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별첨] 아래 대상자가 희망 시 계약기간 내 제출 [29A1형, 29B1형 당첨자만 신청 가능]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선택사항 설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당첨자 성 명		2. 담청자 생년월일	-
3. 주 소	(전화번호 :)		
4. 입주세대	아파트 동 호 (규모 : 전용면적 ㎡)		
5. 주거약자 성 명		6. 주거약자 생년월일	-

7. 신청 내용

구분	항 목	시 설 내 용	신청대상	신청
현관	①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거실/침실	② 거실조명밝기	·거실/침실 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
기타	③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 편의시설 제공대상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4조의2에 의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로서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서 공급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구

8. 제출 서류

1)장애인 수첩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1부.
2)주민등록 등본 1부.
※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본인이 신청을 희망한 편의시설 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첨] 아래 대상자가 희망 시 계약기간 내 제출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는 제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세대주 성 명		2. 세대주 생년월일	-
3. 주 소	(전화번호 :)		
4. 입주세대	아파트 동 호 (규모 : 전용면적 ㎡)		
5. 장애인 성 명		6. 장애인 생년월일	-
7. 구 분	①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 ② 청각장애인(), ③ 시각장애인()		

8. 신청 내용	구분	항 목	시 설 내 용	신청	대 상
	현관	①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①
	거실	② 야간센서등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①
	기타	③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	③
	※ 편의증진 시설 제공대상 ·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서 세대주가 희망하는 가구				
9. 제출 서류	1) 장애인 수첩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본인이 신청을 희망한 편의증진시설 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